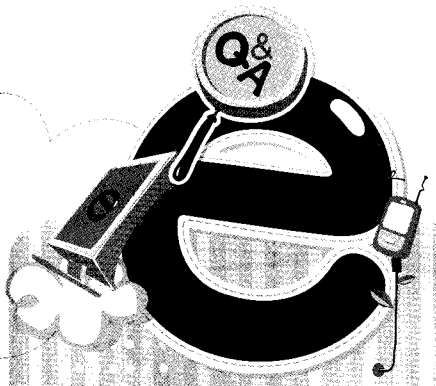

제 목 | 안전관리비 접지 저항 측정기의 사용여부

공공도서관 현장입니다. 공사금액: 15억, 안전관리비: 1,400만원 현장에서의 안전시설비로 접지저항측정기를 구입하여 안전보관관리비로 집행을 하려고 하나 안전담당하는 감리분이 통신공사에서의 접지저항측정기는 반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접지저항측정기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또한 구입하여 공사에(접지저항측정) 사용하는 것은 인정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규정에 의거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접지시설, 접지저항측정기 및 감전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 가설 전기설비, 분전반, 전신주 이설비 등은 제외한다.

- 전선로 활선확인 경보기, 검전기 및 절연봉 설치 또는 구입 비용

귀하의 질의의 경우 정확한 판단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의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상기규정에 따라 접지저항측정기는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목 | 일반건강진단시 공장의 사무직/비사무직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보면 일반건강진단시 사무직 또는 비사무직의 구분에 관한 언급이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 인사 · 경리 · 판매 · 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저희 공장은 생산현장과 사무실이 하나의 건물 안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생산현장의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사무실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출입구와 환기시설 등이 별도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에 가기 위해 생산현장을 통과해야 하는 일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산현장과 사무실이 한 건물동 내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출입구도 따로 있고 서로 전혀 영향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저희 공장의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검진을 받는 사무직 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사의 경우 사무실이 공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기는 하나 비사무직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목 | 현장기술자변경(안전관리자)

현장 안전관리자를 변경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당초 안전관리자와 동일하게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보유한 사람으로 현장 안전관리자를 변경코져하나 감리단측에서 당초 안전관리자보다 현장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전관리자 변경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을 보유해도 현장 경력이 당초 선임자보다 경력이 부족하면 안전관리자 변경이 안되는지 질의합니다. (공사금액 : 125억)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600인 미만을 사용하는 건설업은 시행령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의 경우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오나 총공사금액이 125억인 경우라면 시행령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할 수 있는 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목 | 안전/보건표지 경고문구에 대한 질의(216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2항 213번의 경고문구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과민성물질 경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제점

① 경고문구가 너무 길어 제작을 하더라도 눈에 잘 띄지가 않습니다. ② 경고문구중 사용물질의 유해성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록하면 되지만 동일 작업장에서 다양한 유해성을 가진 물질을 사용시 모두 기록한다면 눈에 띄지 않아 경고의 의미가 전달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질의사항

① 안전보건표지 개정의 목적이 정확한 경고의미 전달이라고 생각합니다.

② 명확한 유해성을 기록하여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경우 경고의 의미전달이 더욱 힘들 것으로 사료되는바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과민성물질 경고"의 내용을 "독성물질 경고" 또는 "유해물질 경고"로 표기하여 눈에 띄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표기하여도 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귀 질의내용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의2에는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4에서는 기본모형(규격비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9조 본문의 취지로 보아 안전보건표지는 그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는 등의 원칙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물질을 구분하여 짧게 구분 표기하여 근로자에게 의미 전달이 잘 되도록 하는 방법이 관련규정상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무안전

제 목 | 일하다 다쳤는데 다 낫지도 않았는데 일을 시키려합니다

약 3주전 공장에서 일을하다 새끼손가락 끝마디를 골절 당했습니다. 1/3정도만 붙어있는채로 살도 파였습니다. 손가락에 핀을 박고 꿰매 전치 6주가 나왔습니다. 산재처리를 하고 입원해서 쉬려고 했는데 공장 측에서는 서로 복잡하다고 개인적으로 처리 해준다고 그렇게 하자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3주간 공장 사무실에서 사무일을 도와주면서 지냈는데 갑자기 공장에서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아직 실밥도 풀지 않고 핀도 제거하지 못한 상태인데도..

그 정도는 다친 것도 아니라면서 실밥 풀고 현장일을 시키려합니다. 기계조작과 무거운 것을 많이 다루고 손을 많이 사용합니다. 대체 이 상태로 어떻게 일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직 치료가 끝나지도 않아서 병원비는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이라도 산재처리는 가능한건가요?

1.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하십시요. 산재신청은 회사가 해 주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재신청은 재해근로자가 하는 것이며 단지 회사는 요양급여신청서상에 사업주 확인(날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설사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거부하며 날인을 해 주지 않더라도 요양급여신청서에 사업주날인누락사유서를 첨부하여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우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출력하거나 다니는 병원의 산재담당자를 만나 요양급여신청서를 받아 작성하고, 회사에 사업주날인을 해 달라고 하시고 만일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처럼 사유서를 첨부하여 병원산재담당자에세 제출하여 산재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www.molab.go.kr)전자민원창구